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87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이건태
최혁진 · 이재관 · 장종태
이정문 · 이주희 · 정준호
염태영 · 안태준 · 손명수
김교홍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자원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는 지속가능항공유는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주목을 받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를 2%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지속가능항공유로 하도록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전세계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사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글로벌시장에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지속가능항공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인공지능, 지속가능항공유-----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